

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67호

「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」 일부개정훈령안

행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에서 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 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된 중점지원 국가에 대한 집중지원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, 도시개발, 스마트시티, 철도 등 분야별 협력모델을 제시하여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 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라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

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

○ 전화 : 044) 201-3529, 3534 / 팩스 : 044) 201-5547